

지역상생협력센터운영규정

제정: 2023.02.15.

개정: 2023.10.16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지역상생협력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센터는 본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, 인적 및 물적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다.

제3조(설치) 센터는 미래전략처 산하에 둔다. <개정 2023.10.16.>

제4조(기능)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관한 업무
2.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협력에 관한 업무
3. 평생교육 및 지역산업 연계 교육에 관한 업무
4.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관한 업무
5.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제반 업무

제2장 조직

제5조(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 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센터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제6조(교직원 등)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두며, 필요한 경우 연구원, 조교 등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7조(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상생협력위원회

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③ 위원장은 지역상생협력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3.10.16.>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센터의 직원으로 한다.

제8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기능)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에 관한 사항
2. 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
3. 평생교육 및 지역산업 연계 교육에 관한 사항
4. 현장애로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
5.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6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안건이 경미한 경우,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,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

제11조(재원)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 예산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2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센터 운영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준용) 센터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